

3. 11 油価引下의 背景과 内訳

尹 秀 吉

〈動力資源部・石油調整官〉

I. 油価調整의 背景

1. 세계原油市場의 동향

原油需要는 先進國의 景氣沈滯 및 油類 소비절약 등으로 81年中 79年対比 9.8%가 감퇴되었으며 반면 原油供給面에서는 81년 11월 以後 사우디가 종전 하루 930万 배럴에서 80万 배럴을 減產, 850万 배럴을 生産하여 需給安定化 상태를 企図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이란-이라크戰을 겪는 동안 空いて버린 市場을 되찾기 위하여 82年 2月 1日字로 70만배럴에서 320万배럴로 增產할 계획임을 발표하고 나이지리아, 리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等이 財政維持를 위하여 増產하였으며, 國際高金利에 따른 金融費用 增加 및 原油價安定推勢를 감안, 國際石油會社가 保有在庫를 방출함으로써 世界原油市場은 하루 約 200万배럴의 供給過剩상태를 示顯하게 되었다.

이러한 原油供給과잉 상태를 반영하여 이란 및 英国은 82年 들어 두, 세 차례에 걸친 原油價引下를 단행하였고, 輕質原油인 英国產 原油의 引下는 OPEC 原油價의 調整을 가져온 촉진제가 되었다.

또한 78年末 이란事態에 따른 第2次石油波動結果 多元化되었던 國際原油價는 81년 10월 29일 第61次 OPEC 特別會議結果 78年末의 單一化 상태로 復歸하고 81년 12월 9일의 第62次 OPEC 會議결과 一部 重質原油價가 引下됨으로써 78年末보다 더욱 單一化되어 原油價多元化에 따라 國內原油價의 90% 以上을 차지하는 原油價를 平準화하여 精油社別 損益差異를 완화하고 產油國의 빈번한 原油價引上과 逆及引上에 따르는 國내原油價調整 要因을 潛定的으로 緩衝하기 위하여 실시된 原油價平

準化制度는 전면 再検討할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이란 및 英国의 原油價引下現況〉

(单位 : \$/B)

	82.1.1	2. 5	2. 8	2. 12	2. 21	3. 1
이란 (I-L)	34.20	33.20		32.20	30.20	
英 国	36.50		35			31

이러한 세계原油市場동향에 따라 政府는 82年 3月 11日字로 原油價평준화制度를 폐지하고, 國內原油價를 2.82% 引下調整하였던 것이다.

한편 油價調整 以後의 세계原油市場 동향을 살펴보면, OPEC는 분열에 까지 이를지도 모르는 급박한 状況을 感知하여 지난 3月 19日 오스트리아 빈에서 第63次 OPEC特別會議를 개최, 基準油價 34 \$/B을 유지하고, OPEC 生產上限線을 하루 1,800万배럴로 감축하기로 결정함으로써 OPEC 基準原油인 사우디輕質油價格이 28 \$/B까지 引下될 것이라는 展望을 뒤엎고 價格에 이어 生產카르텔마저 더욱 強化시키는 저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會議前의 實際產油量이 하루 1,800万 배럴 水準으로 推算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減產效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繼續적인 在庫放出과 細緻적인 需要減退로 供給過剩현상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展望되고 일부 輕質原油價는 OPEC의 原油의 質의 差異에 따른 價格差異 완화推進으로 下落되고 있으므로 原油價는 實質적으로 下落할 가능성이 높후한 것으로 判断된다. 今番 會議결과 OPEC의 減產配定量은 다음(表1)과 같다.

□ 政策論壇 □

(表 1) OPEC 감산배정량

(단위 : 천 B/D)

국 별	1일생산량	할당량	증 감	비 率
사 우 디	850	700	-150	-17.6%
알 제 리	70	65	-5	-7.1
에 콰 도 르	20	20	-	-
리 비 아	80	75	-5	-6.3
쿠 웨 이 트	65	65	-	-
베네수엘라	195	150	-45	-23.1
이 란	110	120	+10	+9.1
이 라 크	130	120	-10	-7.7
나이지리아	175	130	-45	-28.1
인도네시아	149.2	130	-19.2	-12.9
가 봉	14	15	+1	+7.1
카 타 르	40.3	30	-10.3	-25.6
U. A. E.	138.3	100	-38.3	-27.7
중립지대	30.5	30	-0.5	-1.6
計	2,067.3	1,750	-317.5	-15.4%

이를 각국의 經常收支均衡에 필요한 產油量과 对比하기 위하여 다음 (表 2)를 参照할 수 있겠다.

2. 原油価평준화制度 폐지

原油価多元化에 따라 실시되어 国内油価 안정에 기여하여 왔던 原油価평준화制度의 廃止理由는 82年 3月号 “油価引下要因과 内訳”에 상세히 설명

된 바 있으므로 略하기로 한다. 다만 그 背景에 对하여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기로 하자.

政府의 석유정책의 基本課題은 석유제품의 需給安定에 있고, 이러한 수급안정은 價格安定이라는 政策目標와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政府는 64年 이래 国内油価를 直接統制하여 왔고, 이에 따라 政府의 精油社 損益에 对한 直接関与는 불가피하였던 것이며, 民生安定과 산업정책적 考慮下에 결정된 油種間 價格은 國際 價格構造와 절대가격 및 油種間價格의 相對比率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原油 및 石油製品에 대한 輸入統制가 불가피해져 정부의 가격통제는 需給統制로 직접 연결되어졌다. 結局 우리 나라는 「消費地 精製主義」에 100% 의존하다시피 하여 基礎에 너지源을 전적으로 精油社에 의존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른 精油社의 損益을 考慮한 價格政策으로 우리 경제의 量的 拡大 및 구조적 転換과 國際石油市場의 변화에 能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상당한 時間的 乖離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時間的 펴리는 불필요한 油価引上要因으로 작용하고, 原油導入 단계에서 최종 消費者的 소비 단계까지 많은 問題点을 도출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緩和하기 위하여 政府의 價格統制는 단계적으로 완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表 2) OPEC 各国의 減産能力 및 石油收入推移

(单位 : 10億 \$)

国 别	外換保有高	経常收支均衡에 必要한 產油量 (千배 레/日)	1979	1980	1981				
					I	II	III	IV	
								10	11
사 우 디	161.6	6,410	55.35	96.32	27.69	28.08	27.97	9.62	8.21
알 제 리	3.8	1,200	7.38	11.19	2.84	2.65	2.04	0.65	0.79
쿠 웨 이 트	76.2	900	13.87	13.35	4.04	2.83	2.63	0.93	0.78
U. A. E.	38.6	810	12.86	19.45	5.12	4.82	4.60	1.66	1.44
카 타 르	16.1	60	3.58	5.39	1.65	1.42	1.09	0.41	0.36
베네수엘라	7.7	2,400	8.33	11.91	3.94	3.83	3.32	1.95	-
인도네시아	10.0	1,500	8.12	11.67	-	-	-	-	-
리 비 아	33.4	1,070	1.76	2.52	0.62	0.53	0.25	0.08	0.08
이 란	3.0	3,610	17.42	10.10	1.64	1.66	1.68	0.57	0.51
이 라 크	31.8	2,110	28.04	28.78	2.48	3.15	3.09	1.11	1.20
나이지리아	4.5	2,230	16.65	25.61	6.68	4.72	2.72	1.28	1.67
가 봉	0.7	160	1.15	-	-	-	-	-	-
에 콰 도 르	0.7	220	1.05	1.29	0.31	0.35	0.24	0.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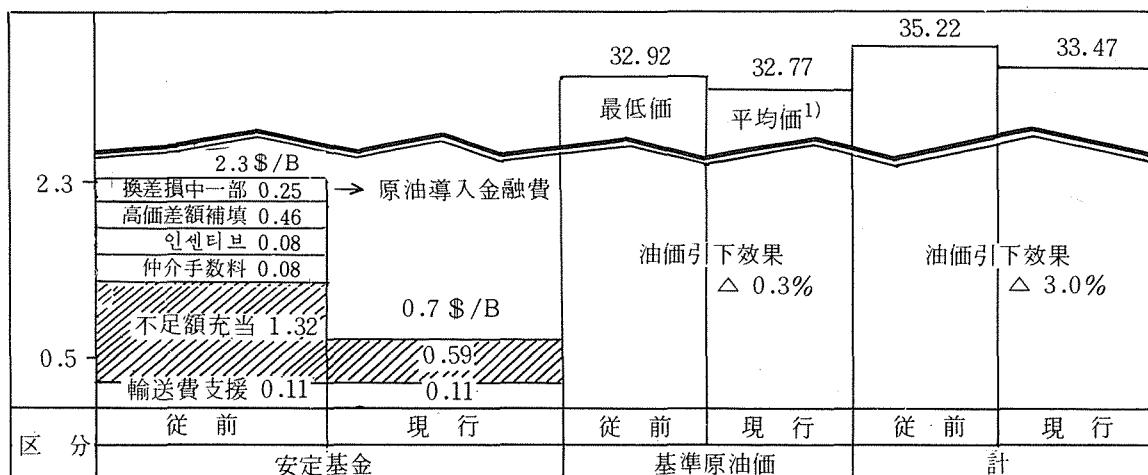
資料 : Financial Times (1982. 2. 26)

原油比重이 가장 큰 원유부문에 競争原理를 도입하는 기본原則下에 政府는 지난 3月 11日 以後 船積되는 원유로부터 原油価평준화制度를 廃止하였다.

勿論 이를 斷行할 수 있기 위하여 지난해 10月 29일 제61차 OPEC 特別會議 이후의 原油価單一化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前提가 있었던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이와같이 原油価평준화 制度를 폐지하고, 안정기금의 用途를 原油導入先 다변화 推進을 위한 追加輸送費 등 支援所要分과 지난 2月末로 1,345億원에 달하는 安定基金 不足額을 83年 3月末까지 해소하는 財源으로 국한시킴에 따라 安定基金은 종래 배당 2.3\$에서 0.7\$로 그 徵収規模가 축소조정되었고, 이에 따른 油価引下 효과는 2.7%에 달해 그 間의 換率上昇에 의한 油価引上要因을 相殺하고도 油価를 引下할 수 있는 主要財源이 되었던 것이다. (表3 參照)

또한 油価算出 内訳面에서 살펴보면, 종래에는 最低導入社의 原油価를 油価에 반영하고 平均導入価와 最低導入社의 原油価와의 차이를 安定基金 中 일부인 高価差額補填 所要財源으로 油価에 반영하던 제도에서 油価反映 原油価를 평균도입가로 轉換시킴으로써 지난 7月 10일 原油価 平準化 실시 이전의 油価制度로 되돌아 가게 된 것이다. 참고로 平均導入価 算出내역을 살펴보면, 契約物量 기준의 產油국 公示価格 (posted price) 加重平均值를 적용하되 產油국의 유전ス期間 30日 超過分은 差減하고 종전에는 平均導入価 算出時 제외시켰던 低質原油도 포함시키고 있다.

〈表3〉 安定基金徵収規模 縮少



II. 油価調整 내역

1. 油価引下 要因

今番 油価引下要因은 앞에서 설명한 原油価 引下要因과 原油価평준화制度 廃止에 따른 引下要因外에 81年 4月 19日 油価調整時 81年 1~3日의 缺損을 81年末까지 償却하기 為하여 精製費에 반영되어 있던 419원/배럴과 同額을 82年 3月 10日까지 油価에서 差減하지 않음에 따른 精油社의 差益을 82年末까지 상각하는 水準의 84원/배럴 및 82年度 LPG 輸入에 따른 精油社 利益 449億원 (236 원/배럴)을 精製費에서 差減하고 82年 1月 1日 輸入承認分부터 貿易特許資金이 CIF의 0.11%가 引下됨에 따라 원유도입附帶費를 引下조정하여 總 6.22%에 달하였다. 그러나 換率이 690원/\$에서 714.30원/\$로 上升하여 油価引上要因으로 2.8% 작용하였고, 原油価平準化制度 폐지에 따라 安定基金에 의한 換差損一部 補填所要가 앞의 〈表3〉에서 보는 것처럼 원유도입 金融費로 전환되어 0.6%의 引下要因이 됨으로써 国内油価는 2.82%를 引下할 수 있게 된 것이다.

国内油価 算出時에는 석유제품輸出入에 따른 損益을 油価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 石油製品의 輸出入은 国内需要 및 공급상황에 따라 不規則的으로 이루어지며, 国際市場価格은 수급상황에 따라 수시로 謄落하므로 이를 予測·反映하기는 거의 불가능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国内油価 算出의 경우, 석유제품輸出時에는 国内告示価格과 동일한 가격으로 販売하고, 輸入時에는 国内석유제품 生産原

価値와 동일한 価格으로 輸入한다는 것을 前提로 하고 있다.

그러나 LPG의 경우에는 82年度 国内 需要予測量 63万톤의 44%인 28万톤이 輸入될 것으로 展望되고 輸入価格이 확실히 파악되고 있으므로 이를 算出, 반영하여 国内油価를 0.7% 引下하는 財源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이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表 4)

(表 4) 今番 油価調整要因

구 分	81. 11. 29	82. 3. 11	유가조정요인
I. 유기인하요인			
(1) 기준원유인하	32.92\$/B	32.77\$/B	△ 0.3%
(2) 원유도입부대비인하	1.25 "	1.16 "	△ 0.3%
(3) 안정기금징수액인하	2.3 "	0.7 "	△ 3.3%
(4) 정제비인하	2,366원/B	1,595원/B	△ 2.3%
소 계			△ 6.22%
II. 유기인상요인			
(1) 환율상승	690원/\$	714.3원/\$	△ 2.8%
(2) 기금에 의한 환차손 보전액의 원유도입 금융비 전환	0	182원/B	△ 0.6%
소 계			△ 3.4%
계	32,855원/B	31,930원/B	2.82%

2. 調整内訳

이러한 2.82% 引下財源中 우선 LPG輸入에 따른 利益予想分을 償却함에 따른 油価引下要因 0.7%로 LPG価格을 10.6% 引下하고, 残余 2.12%를 産業의 국제 경쟁력 強化를 위하여 사용하되 石油化学工業이 輸出高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石油化学工業의 基礎原料인 나프타価格을 11.6% 引下하여 나프타를 分解·생산하는 에틸렌価格이 경쟁 상대국인 台湾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残余要因으로 B-C油를 平均 2.4% 引下調整하였다.

우리나라는 産業用 油類消費比重이 높아 軽質油인 捕發油·燈油·輕油等의 需要가 低調하므로 他国과 동일한 原油費와 精製費가 소요될 경우 절대가격이 他国에 比해 높을 수 밖에 없으며, 더욱이 油類消費者価格中 諸稅公課金等이 차지하는 費用이 20%에 달하여 이를 더욱 加重시키고 있다.

더구나 油種別価格 算出時에는 산업의 国際競爭

力 강화측면과 民生安定的 側面이 적절히 配分 고려되어 결정되었으나, 현실적으로 보면 産業의 기초燃料인 B-C油는 상대적으로 높고 輸送用의 大宗을 차지하는 軽油 및 난방용 油類인 燈油는 상대적으로 낮게 策定되어 있다. 이에 따라 B-C油는 国際価格과 상당히 乖離되어 실수요자들이 直輸入을 요청하고 있으나, 番油種만 直輸入하고 国際価格가 国内価보다 비싼 油種은 直輸入하지 않게 될 경우 精油社의 存立은 어렵게 되고 国内 石油製品需給은 全的으로 輸入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어 国内 석유제품需給安定의 基盤이 무너지게 됨과 동시에 견잡을 수 없는 破局으로 치닫게 될 우려가 놓후한 것이다.

그러나 경제가 安定的으로 성장하기 위하여는 産業의 기초원료 및 燃料는 국제가격수준으로 引下調整되어야 한다. 비단 2.4% 引下에 그쳤지만 今番의 나프타 및 B-C油 価格의 引下는 그런 觀點에서 상당한 意義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III. 3. 11 油価調整과 関聯한 小考

國際油価의 앞날에 对한 專門家들의 의견은 百人百色이다. 第3次 石油波動이 닥칠 것이라는 見解를 피력하는 이들의 論点을 살펴보면 中東地域의 政情不安 이외에도 대략 다음과 같은 要因으로 大別된다.

첫째, 石油需要의 減退는 현재의 世界景氣 不況 때문이며 경제가 회복되면 다시 從前의 수준 또는 그 以上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高油価는 長期的인 石油需要, 특히 世界原油消費의 2/3를 차지하는 난방용연료의 需要를 垂食시킨다고 하나, 原油의 主要 代替源은 人工燃料이며, 현재 石炭의 액화等 人工燃料의 開發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또한 OECD의 石油需要는 減少한다 하더라도 低開發國의 石油需要는 계속 급격히 늘어날 것이며, 80年代 후반에는 소련을 비롯한 東歐圏이 石油輸入國으로 反転될 것이란 점이다.

넷째, 石炭価格이 石油価格 수준만큼 오르리라는 点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박은 또한 다음과 같다. 즉 첫째, 日本은 최근 GNP는 성장하면서도 石油消

□ 政策論壇 □

費는 減少되고 있으며,

둘째 : 原油의 主要代替源으로 보다 싼 石油代替物이 많이 등장, 實用化되어 있고,

셋째 : 低開發國의 石油需要가 늘어날지는 사실상 疑問이며,

넷째 : 石炭価格은 國際市場에서 경쟁에 의해 결정되며, 매장량의 추가발전可能性도 매우 높은 点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中·長期 세계原油市場의 動向은 쉽게 짐칠 수 없으나, 당분간 原油価가 現行 水準을 유지하거나 다소 引下될 것이라는 展望에는 대부분一致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原油市場 動向이 이번에 国内油価를 引下調整하게 된 主要背景인 것이다.

그러나, 実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기름값을 내린 措置에 조그마한 자긍심을 가지면서도 주위에서 이번 引下措置의 경위와 内容에 對하여 講論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石油行政의 実務가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実感하게 되었다. 이번에 내린 平均引下率 2.82%가 엄격한 意味에서는 국제原油価引下에 의한 직접적인 結果라기보다는 그 동안의 高油価時代에 대처하기 위하여 実施해 온 安定基金制度 개선과 精油会社의 精製費引下에 의한 要因이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다른 商品의 来去와는 달리 外上代金(유전스)에 의한 決裁方式을 채택하고 있는 原油에 있어서 挪率上升은 국제原油価引上에 못지않게 国内油価引上의 큰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다.

이번 油価引下만 하더라도 國際原油価引下에 따른 직접적인 要因은 0.3%밖에 되지 않으나, 挪率은 작년 11月 油価調整때보다 2.8%나 올랐다.

따라서 従來와 같은 油価制度 아래서는 오히려 引上要因을 안고 있는 実情이 있다. 그러나 비싼 原油를 導入하는 精油会社에 差額을 补填해 줌으로써 国内石油需給의 安全瓣 역할을 해 온 安定基金制度가 최근의 國際原油価引下 환경속에서는 적절치 못하여 原油価平準化制度를 廃止함으로써 引下要因을 마련케 된 것이다.

이 機会에 기름값 調整을 포함하여 평소 실무자로서 느끼는 몇 가지 所感을 적어본다.

첫째는 에너지당局이 油価調整을 国民의 便에서

보다는 精油会社의 利益에만 급급하여 주먹구구식으로 해오지 않았나하는 国民의 뿌리 깊은 不信感이 주는 고충이다.

우리 나라가 消費하는 石油製品量을 年間 2億 배럴로 잡으면 배럴당 기름값을 1百원 내릴때 国民負担은 2百億원이 줄어든다. 反面 精油会社로서는 2百億원의 損害가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이와같이 단 몇원의 価格變動도 그 미치는 영향이 深大함을 생각할 때, 実務者들이 価格算定의 基礎가 되는 精油社原価檢証의 正確을 기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努力を 하고있는 事実을 알고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둘째는 다른 工產品의 価格決定과는 달리 石油製品의 경우는 原価構成의 硬直性이 強하여 価格調整要因이 되는 变数가 极히 限定되어 있다는 실정이다.

国内油価의 原価構成은 消費者価格 基準으로 볼 때, 產油국의 原油代金部門이 74%, 政府에서 公課金條로 徵收하는 部門(特別消費稅, 關稅, 防衛稅附徵稅, 法人稅, 貿易特計資金, 備蓄基金)等이 20%, 石油流通過程(代理店, 充填所, 注油所, 副販店等)의 마진이 2.5%, 그리고 精油会社의 精製費部門이 約 3.5%로서 쉽게 손댈수 있는 要因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세째는 최근 現物市場의 原油価引下라는 短期의 인 현상을 보고 現物市場으로 부터의 低廉한 原油導入을 과감히 늘려서 國際收支負擔을 낮추어야 한다는 일부의 見解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短期의인 現象을 变数로 하여 政策을 결정하다 보면 위낙複合的要因이 작용하는 國際石油市場에서 危機가 발생할 경우 對処할 장치가 전혀 없게 된다. 잘못하면 国民經濟는 一時에 파국을 면할 길이 없게 된다는 뜻이다. 이는 78年末 이란事態에 따른 第2次 석유파동結果 우리가 이미 경험한 일이다. 79年末부터 80년에 이르는 物量不足파동 당시에는 価格은 고사하고 生物量이 없어 石油製品需給에 一大危機를 맞을뻔 했던 것이다. 돌아보면 볼 때, 이러한 要因들에 대한 弘報가 사실상 未弱했던 점을 否認할 수는 없다. 石油란 国民經濟의 혈액과 같은 것이므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러한 問題에 能動的으로 對処하여야 할 것임을 뼈저리게 느낀다. *